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
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
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서울특별시의회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에 따
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'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'는 일부 규정에 있어

개인의 자율과 사생활을 침해하거나,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헌법상 권리인 모성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

공무원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며, 난임 치료 등의 지원에 있어 모성보호제도를 보완하는 등 지원 근거 규정 보완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시민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